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2019. 12.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159
----------	--------

2019. 12. 6.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위생과)
- 나. 제 출 일 : 2019. 11. 15.
- 다. 회 부 일 : 2019. 11. 18.

2. 제출이유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위탁시설 : 마포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사무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 급식 규모별 식단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상별(어린이, 학부모, 교사, 조리원 등) 위생·영양교육 실시 등
- 위탁기간 : 3년

-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주체 : 공개모집 /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 관리대상 : 201개소(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 소요예산 : 3억(국비9천만원, 시비1억5백만원, 구비1억5백만원)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급식소 규모 및 대상 연령에 맞는 식단 및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 함.
- 상시적으로 급식소의 실태조사 등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전담 관리가 요구 됨.
-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대학교, 단체 등)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0년 소요예산 : 111,500천원
 - 센터설치 운영 재원 부담율 : 시비 35%, 국비 30%, 구비 35%
 - 2020년 소요 예산 : 2020년 9월부터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금액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11,500	33,000	38,500	40,000
센터신규설치	110,000	33,000	38,500	38,500
사무관리비	1,500	0	0	1,500

※ 사무관리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500,000원=(70,000+30,000원)×5명×1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협약서 공증비용
1,000,000원=500,000원×2부

5. 검토의견

가. 제출 배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2020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보육문제에 있으며,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¹⁾하면서, 보육시설의 보육 질적 향상과 영유아기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정과제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8개소이고, 그 중 서울시에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구 분	지자체	설 치 현 황		미설치수	비 고
		설치수	설치율		
전 국	228	219	96%	9	
서 울 시	25	19	76%	6	미설치(6개소) :마포,광진, 용산,관악,강남,영등포

<표1.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²⁾>

- 마포구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158개소로서 식약처 권고 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보고서(2015.11)

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019. 8월 기준)

모별 설치기준에 따르면 5억 규모이나, 신규센터 설치로 인하여 100개 미만으로 설정하여 3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등록대상 규모별	설치금액	국 비	시 비	구 비
158개소 100% 등록시	500,000	150,000	175,000	175,000
100개소미만 등록시	300,000	90,000	105,000	105,000

<표3. 이용규모별 예산기준(식약처)>

사업규모		3억	4억	5억	비 고
관리급식소수		60 ~ 99	100 ~ 139	140 ~ 179	※ 158개소(100%) 등록할 경우 사업규모 5억까지 가능
직 원	계	7명	9명	11명	
	센터장	1	1	1	
	팀 장	1	2	2	
	직 원	5	6	8	

<표3. 2019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약처)>

구 분	사무실(직원수)			교육실	조리실	소회의실
	7명	9명	11명			
면적(기준)	50㎡	80㎡	120㎡	50명 수용	30명 수용	10명 수용

<표4. 사무실 권고기준 직원1인당 7.2㎡(행안부)>

다. 종합 의견

- 어린이 건강증진과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성 등의 사회적 요구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추진과 위탁의 필요성 등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가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국·시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관내 시설현황을 검토한 결과 향후 더 많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 시설의 규

모와 사업범위에 맞는 인력 구성 등을 신중히 조사하고 우수 운영사례
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 계 법 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중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중략)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